

[별표 1] <개정 2008.2.4>

먹는물의 수질기준(제 2 조 관련)

1. 미생물에 관한 기준

가.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(Colony Forming Unit)를 넘지 아니할 것. 다만, 샘물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/mL, 중온일반세균은 5CFU/mL 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,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℃를 유지한 상태에서 12 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/mL, 중온일반세균은 20CFU/mL 를 넘지 아니할 것

나. 총 대장균군은 100mL(샘물·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)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. 다만, 제 4 조제 1 항제 1 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(試料) 수가 20 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다. 대장균·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 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. 다만, 물·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라. 분원성 연쇄상구균·녹농균·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 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(샘물·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)

마. 아황산환원형기성포자형성균은 50mL 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(샘물·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)

바. 여시니아균은 2L 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(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)

2.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

가. 납은 0.0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나. 불소는 1.5 mg/L(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2.0 mg/L)를 넘지 아니할 것

다. 비소는 0.01 mg/L(샘물의 경우에는 0.05 mg/L)를 넘지 아니할 것

라. 셀레늄은 0.0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마. 수은은 0.00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바. 시안은 0.0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사. 크롬은 0.05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아. 암모니아성 질소는 0.5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자. 질산성 질소는 10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차. 카드뮴은 0.005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카. 보론은 1.0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타. 브롬산염은 0.01mg/L 를 넘지 아니할 것(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)

파. 스트론튬은 4mg/L 를 넘지 아니할 것(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)

### 3.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

가. 페놀은 0.005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나. 다이아지논은 0.02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다. 파라티온은 0.06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라. 페니트로티온은 0.04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마. 카바릴은 0.07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바. 1,1,1-트리클로로에탄은 0.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사.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.0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아.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.03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자. 디클로로메탄은 0.02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차. 벤젠은 0.0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카. 톨루엔은 0.7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타. 에틸벤젠은 0.3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파. 크실렌은 0.5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하. 1,1-디클로로에틸렌은 0.03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거. 사염화탄소는 0.002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너. 1,2-디브로모-3-클로로프로판은 0.003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더. 1,4-다이옥산은 0.05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### 4.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(생물·먹는생물·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)

가. 잔류염소(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)는 4.0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나. 총트리할로메탄은 0.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다. 클로로포름은 0.08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라.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.03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마.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.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바.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.03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사.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.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아.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.09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  
자.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.004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

차. 할로아세틱에시드(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)는 0.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5.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

가. 경도(硬度)는 300 mg/L(먹는샘물의 경우 500 mg/L,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,200 mg/L)를 넘지 아니할 것. 다만,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나.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다.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

라. 동은 1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마.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

바. 세제(음이온 계면활성제)는 0.5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. 다만, 샘물·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사. 수소이온 농도는 pH 5.8 이상 pH 8.5 이하이어야 할 것

아. 아연은 3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자. 염소이온은 250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차. 증발잔류물은 500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. 다만,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,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 mg/L 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카. 철은 0.3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. 다만,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타. 망간은 0.3 mg/L(수돗물의 경우 0.05 mg/L)를 넘지 아니할 것. 다만,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파. 탁도는 1NTU(Nephelometric Turbidity Unit)를 넘지 아니할 것. 다만, 수돗물의 경우에는 0.5NTU 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하. 황산이온은 200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거. 알루미늄은 0.2 mg/L 를 넘지 아니할 것

